

제148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일시·장소: '26. 6. 4.(목) 16:00 ~ 17:3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자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(온라인 출석)

○ 해양경찰청 : 기획조정관, 안건 소관 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7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3건(원안의결 2, 수정의결 1), 보고 1건

【심의·의결 3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부서
1	훈령	「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정과제(MDA 구축 등) 핵심 업무추진을 위해 설치된 '해양영역인식과'의 존속기한 연장 - (기존) 2026년 6월 28일 까지 → (개정) 2026년 12월 28일까지 	원안 의결	혁신 행정
2	훈령	「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광역방제지원센터 명칭에 제주광역방제지원센터 추가 방제기자재 보급관할에 강릉해양경찰서 추가 IMO기준대표 고위험 유출량 근거로 방제자원 확보 기준 재정립 	원안 의결	방제 기획
3	훈령	「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 구성·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수정사항 연합회 설립권자를 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전국연합회(청장), 지역연합회(지방청장)으로 수정 	수정 의결	기동 방제

【보고 1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6월 주요 업무보고	기획재정

첨부1

수정의결 사항

□ 「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18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<u>사항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.</u>	제18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</u>
수정사유 문법이 어색한 제18조 단서조항 조문을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13조(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)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,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(이하 "전국연합회"라 한다)와 <u>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(이하 "지역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	제13조(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)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,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(이하 "전국연합회"라 한다) <u>를 설립할 수 있고,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할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(이하 "지역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</u> ② (개정안과 동일)

수정사유 지역 단위 조직인 지역연합회의 설립권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는 것이 정의 조항 및 조직 체계에 부합하므로 제13조제1항에서 전국연합회는 해양경찰청장이, 지역연합회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설립하도록 설립권자를 구분

- 「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 - 불가피하게 임시기구로 운영해야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, 매년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 - 내년에도 동일하게 자율기구로 운영할 경우 부서 명칭 변경없이 ‘해양영역인식과’를 그대로 쓰는 것은 어떠한지?
 - 위성센터 완공 이후에는 해양영역인식과의 위성 사무가 이전될 예정으로, 이후 부서 업무를 구체화하면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 우선 정규 직제화를 위해 노력하겠음.

- 「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
 - 방제기자재 비축률이 약 80%정도인데, 비축률 100%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?
 - 각 해양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제기자재를 포함하면 실제 비축 기준량의 100%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. 비축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사고가 컸던 ‘허베이 스피리트 사고’ 시 1주간 소비되었던 방제기자재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, 1주 이후에는 국내 공장에서 추가 기자재 생산하여 지원이 가능함.

- 장비의 재배치 등을 통해서 현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인지?
 - 각 해양경찰서 장비까지 포함하면 현재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.
- 개정안 [별표2]는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비축 기준량에 대한 것인데 해양경찰서에서 보유 중인 방제기자재까지 포함해서 비축 기준량을 충족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은지?
 - 해양경찰서에 배치된 장비들을 광역방제지원센터로 재배치할 예정임. 장비 재배치가 완료되면 비축률이 100%가 됨. 광역방제지원센터는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재배치하여 관리하게 되고, 해양경찰서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기자재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게 됨.
 - 재배치를 통한 최종적인 기준량을 설정한 것이며, 추가적인 구매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?
 - 그러함. 현재 방제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고, 추후 노후 장비는 대체할 예정임.
- 방제기자재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?
 - 배가 대형화되고 정유 시설 인근 해역의 유조선 통항이 증가함에 따라 충돌 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대비가 주 용도이며, 기타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기자재도 보유하고 있음.

□ 「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

-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게 된 사유와 연합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?
 - 전국연합회 운영을 위한 준비 및 예산 필요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임시로 구성하였으나,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전국연합회가 적법하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- 지역연합회는 어촌계별로 구성되어 있고,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다 보니 지역연합회 운영경비는 각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. 해양경찰청에서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·훈련 비용, 장비 마련, 활동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.